

의안번호	2218245
의 퇴 인	김용태의원
회 답 일	2026. 7. 9.
추 계 번호	26B2076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4조의2(정비기술교육 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기술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5항 신설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(제6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4조의2(정비기술교육 등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술교육 운영비용 지원(안 제64조의2제5항)

- 현행법¹⁾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(이하 “정비기술교육”)을 받

1) 제64조의2(정비기술교육)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(이하 “정비기술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게 할 수 있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게 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2026년 7월 현재, 전문교육기관은 총 7개 기관(영남이공대학교, 중부대학교, 전주비전대학교, 아주자동차대학교, 강원테크노파크,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, 동서울대학교)이 지정되어 있음

○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술교육의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2025년 기준 정비기술교육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정비기술교육 현황: 2025년 기준

실시 기관	실시 횟수(시기)	실시 인원	소요 비용	비용 부담
영남이공대학교	11회 (4.12~13, 4.26~27, 5.17~18, 5.31~6.1, 6.14~15, 6.21~22, 7.12~13, 8.9~10, 9.13~14, 9.27~28, 11.22~23)	자동차정비업 종사자 231명	인당 약 40만원/회	교육대상자 자부담 원칙이나, 지자체(대구시, 경북도)가 100% 지원함
중부대학교	3회 (8.9~10, 8.23~24, 9.13~14)	자동차정비업 종사자 87명	인당 약 50만원/회	교육대상자 자부담 원칙이나, 국가가 100% 지원함
전주비전대학교	2회 (9.20~21, 9.27~28)	자동차정비업 종사자 40명	인당 약 50만원/회	교육대상자 자부담 원칙이나, 국가가 100% 지원함

자료: 국토교통부

○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술교육의 운영 비용을 지원할 경우 현행 정비기술교육의 대상 및 지역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정비기술교육의 확대 실시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정비기술교육 대상·지역 등의 규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술교육 이수인력 고용 사업자에 대한 보조·
용자(안 제64조의2제6항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술교육 이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정비기술교육 이수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수,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·장비의 종류 및 규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·용자 기준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정비기술교육 이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통계 등의 자료가 부재하고, 각 사업자에 따라 필요 시설 및 장비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개정안에 따른 보조·용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